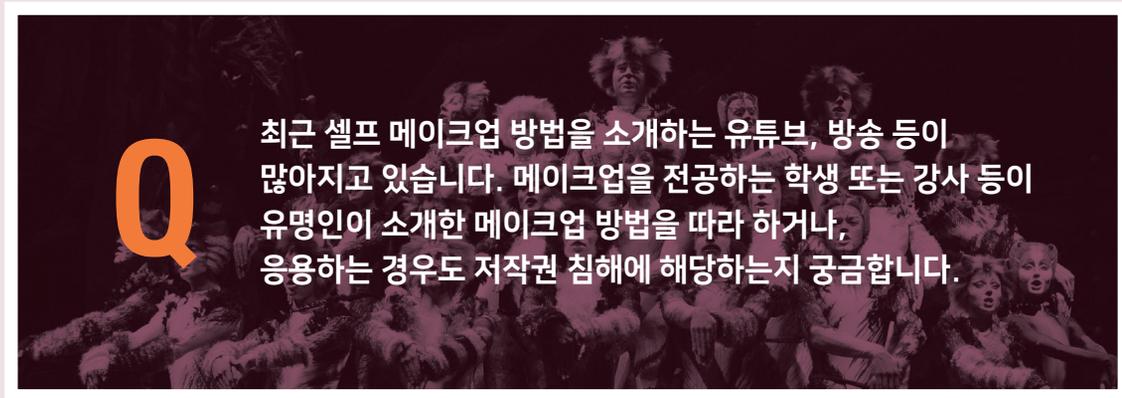


저작권 보호



메이크업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글.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Q 최근 셀프 메이크업 방법을 소개하는 유튜브, 방송 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메이크업을 전공하는 학생 또는 강사 등이 유명인이 소개한 메이크업 방법을 따라 하거나, 응용하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메이크업의 저작물성**
 사람의 얼굴에 그려지는 화려한 색조화장, 손발톱에 하는 네일아트, 또는 몸통이에 새겨지거나 그려지는 문신 또는 바디페인팅 모두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저작물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된다면 얼굴이나 손발톱 기타 신체 부위에 그려지는 여러 가지 페인팅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적인 보호를 못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그림의 바탕이 캔버스나 목판 등이 아니고 사람의 살갓죽이라는 점을 빼면 크게 다툼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일종의 그림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로 볼 수 있겠다. 그렇지만 눈, 코, 입 또는 손발톱에 그려지는 페인팅은 영구적인 작품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고정에 불과하고, 또 신체 부위에 그려지는 메이크업이나 페인팅은 성격상 예상 가능하거나 표현의 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 창작성을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호를 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은 없는 듯하다. 메이크업의 저작물성과 관련하여 정면으로 다룬 외국 사례로는 뮤지컬 캣츠(Cats)의 등장인물 메이크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을 들 수 있다(Carell v. Shubert, 104 F.Supp.2d 236 (S.D.N.Y. 2000)).

뮤지컬 캣츠의 뉴욕 공연에서 캣츠 캐릭터의 독특한 메이크업을 창작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뮤지컬 제작사 등의 사이에 벌어진 캣츠 메이크업의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었다. 이 사건에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캣츠에 등장하는 무대 메이크업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하였다. 뮤지컬 캣츠의 캐릭터 메이크업은 8겹까지로 이루어진 메이크업으로 공연마다 분장을 하는 데 몇 시간이나 걸린다고 한다. 일견 보기에 독창성이 엿보인다.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유형적인 매체에 고정될 필요가 있는데, 과연 무대공연 때마다 분장을 하고 다시 지워지는 것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고정요건이 충족되는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공연마다 배우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메이크업은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고정되기 때문에 고정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이다.

또 하나 메이크업의 저작물성과 관련하여 살펴봐야 할 케이스로 미국의 팝가수 레이디 가가(Lady Gaga)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메이크업을 둘러싼 프랑스 전위미술가 올랑(Orlan)이 제기한 분쟁을 들 수 있다. 프랑스 전위예술가인 올랑은 미국의 팝가수 레이디 가가의 'Born This Way'라는 싱글앨범의 뮤직비디오 및 싱글 커버사진이 자신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2013년 프랑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뮤직비디오 및 싱글앨범 커버사진에는 레이디 가가의 이마와 광대뼈에 기괴한 혹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메이크업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신의 기존 얼굴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올랑은 이른바 육체미술(Carnal Art)이라는 장르를 창안했는데 자신의 얼굴에 대한 성형수술을 통해 일종의 예술작품을 완성하였다.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올랑은 9번에 걸쳐 얼굴과 신체에 성형수술을 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부터 보티첼리의 비너스에 이르는 미술사에서의 중요한 미술작품의 특징을 모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성형을 하기도 하였다. 실제 사진을 보면 잔혹하고 끔찍하기도 한 전위미술 행위를 자신의 얼굴 등에 성형수술을 통한 방법으로 구현한 것이다. 그러한 성형수술로 완성된 얼굴, 특히 얼굴 이마 등에 기괴한 혹 덩어리 등과 같은 표현이 레이디 가가의 뮤직비디오에 표절되어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프랑스 법원 항소심은 결국 레이디 가가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그 이유는 양자의 이미지가 유사하지 아니하고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올랑의 성형수술 작품이나 레이디 가가 뮤직비디오의 얼굴 이미지 모두 기괴하고 독창적임에 틀림없고, 올랑의 작품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결론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메이크업의 창작성과 저작권 침해 소송

하지만 뮤지컬 캣츠의 무대 메이크업이나 전위예술가의 독특한 얼굴 성형 정도에 이르지 않은, 일상적인 메이크업에도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을까? 저작권법상 일정한 분야의 흔한 표현은 일종의 표준장면이론 내지 표준적 삽화이론(scenes a faire)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눈, 코, 입 또는 손발톱에 그려지는 페인팅에는 그 창작성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상 메이크업과 독특한 캐릭터 메이크업 사이의 스펙트럼은 다양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경계는 모호하다. 따라서 일상 메이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의 정도에 따라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몸에 새겨진 문신은 어떠할까? 흔해빠진 타투 디자인, 예를 들어 하트모양에 남녀 커플의 이름 이니셜이 들어간 것이라든지, 어릿광대 얼굴과 같은 문양은 저작권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타투 자체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 또한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 실제 타투와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사례로 마이크 타이슨의 얼굴 타투를 둘러싼 영화 '행오버 2'(The Hangover 2) 타투 저작권 침해 소송이 유명하다. 영화의 주인공 에드 헬름이 헤비급 권투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의 얼굴에 그려진 타투와 유사한 타투를 하고 영화에 출연하였던 것이다. 영화 트레일러를 본 마이크 타이슨의 타투 아티스트는 영화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는 소송 외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타투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또 하나의 사례로 미국 NBA 선수들이 등장하는 비디오게임 NBA 2K16 사건이 있다. NBA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의 사진 이미지에 그의 문신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그 타투 아티스트가 비디오게임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것이다.

한편 무대 메이크업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상표로 등록될 수도 있다. 그 메이크업이 충분히 특징적이고 식별력이 있어 일정한 출처를 표시할 수 있게 이용되는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록밴드 KISS의 흑백 기하학적 풀 메이크업은 상표로 등록되기도 하였다. KISS 얼굴 분장은 매우 특징적인데 이러한 록밴드의 얼굴 메이크업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미국 특허상표청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상표 등록에 성공한 것이다.

결국 얼굴이나 신체 부위에 행해지는 메이크업, 페인팅, 문신, 네일아트도 그 독창성의 정도에 따라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메이크업, 바디페인팅, 네일아트 등은 그 일시성으로 인하여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게 되는데 이때에는 사진저작물 또는 영상저작물이라는 별도의 저작권이 발생하므로 사진작가나 영상제작자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계약에 의해 그 권리의 처리에 관한 합의를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